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평택 대학교)의 2022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평택대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평택대학교)의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

2023년 4 월 6 일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감사 김 예 희 (인)

감사 김 호 룡 (인)

피감사자 (입회인)

1. 직위 법인 과장

성명 조 승 래 (인)

2. 직위 대학 재무회계팀 팀장

성명 엄 정 아 (인)

3. 직위 법인 사무국장

성명 박 재 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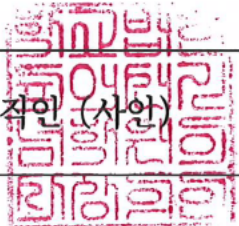
4. 직위 대학 행정지원처장

성명 박 종 민 (인)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2회계연도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1. 예산 내 지출을 위한 시스템 활용 방안 강구 현재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을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임. 예산 담당자가 예산 금액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품의서 자체가 생성되지 않도록 통제 절차를 보완할 것을 권고 함.(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2. 임대보증금 관리 절차의 보완 임대보증금은 적시에 임대보증금 전용 통장으로 이체되어야 하는 바 2022년에 입금된 임대보증금이 다음 기수에 임대보증금 통장으로 이체된 사실(2백만원)과 계약된 임대 건에 대한 임대보증금 잔금이 다음 기수에 입금되는 등 적시에 처리되지 않은 건이 발견 됨.(수익사업회계) 3.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교수들에 대한 처리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그에 따른 응분의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4. 징계관련 건은 징계시효 3년(사건 발생일 2020.11.23.)을 감안하여 적절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1. 현재 회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예산 담당자가 회계프로그램 내에 예산을 입력하면 지출담당자는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됨. 위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예산 초과 집행 전에 예산 전용 및 추경을 진행할 예정 2. 임대차 계약 후 14일 이내에 임대보증금 현황을 점검하고 미납된 임대보증금이 없는지, 임대보증금이 전용 통장으로 적시에 이체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음. 3.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에 대해 징계 심의를 예정하고 있음. 이사회 심의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리를 진행하고자 함 4.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에 대해 징계 심의를 예정하고 있음. 징계시효 3년을 고려하여 처리할 예정임.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장 이 계 안	직인 (사인) 

[별지 제3호 서식]

평택 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2회계연도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해당 사항 없음.	
피감사기관장 평택 대학교 총장 이 동 현	직인 (자인) 

[별지 제4호 서식]

사학기관 재산상황 및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 중점 확인사항		
감사 분야	감사 확인사항(지적사항 유형)	근거 법령 및 참고사항
1. 기본적 사항 [재무제표 신뢰성 검증] 법인일반업무회계 법인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재무제표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 매년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사립대학 예산 유의사항」 - 매년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2. 공통사항 [재산·회계감사] 법인일반업무회계 법인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 예산 목별 계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여 수입·지출 항목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예산 성립전 예산의 집행 여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유용·횡령 여부 포함) - 예산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적정성 여부 - 예산 전용 절차 및 규정의 준수 여부 - 예산 총계주의 준수 여부 - 예금 계좌 구분 관리의 적정성 여부 - 보수규정의 적정성 및 규정에 따른 인건비, 수당 지급 여부 - 전년도 지적사항 시정 여부 - 기타 중요한 확인사항	- 매년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사립대학 예산 유의사항」 - 매년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사립학교법」 제32조3 「고등교육법」 제11조 「대학교 등록금에 관한 규칙」 - 공익법인 세무안내

사학기관 재산상황 및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 중점 확인사항		
감사 분야	감사 확인사항(지적사항 유형)	근거 법령 및 참고사항
3. 법인 일반업무 회계 또는 수익사업 회계	-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절차 및 임대보증금·임대료 관리 적정 여부 - 임대계약서 작성, 임대료 산정, 임대보증금 별도 구분 관리 등 - 법인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대납하거나 학교수입을 법인에서 세입처리하는지 여부	- 매년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사립대학 예산 유의사항」 - 매년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공익법인 세무안내
4. 교비회계	- 잉여금처리원칙 마련 여부 - 등록금 및 수강료 반환규정에 따라 적절히 반환하였는지 여부 - 입학전형료 미집행 잔액 반환 여부 -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현황 검토	- 매년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사립대학 예산 유의사항」 - 매년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사립학교법」 제32조3 「고등교육법」 제11조 「대학교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법인 이사회 운영 및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중점 확인사항		
감사 분야	감사 확인사항(지적사항 유형)	근거 법령 및 참고사항
1. 공통사항 법인일반업무관련 수익사업 관련 학교운영 관련	1. 내부통제의 취약점 또는 개선점 2.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시정 여부 3. 기타 이사회 업무에 관한 사항	• 「사립학교법」
2. 법인일반업무 관련	이사회의 운영 사항 전반의 적정성	• 「사립학교법」
3. 수익사업 관련	1. 수익사업에 관한 소송내역 검토	• 「사립학교법」
4. 학교운영 관련	학교 운영 효율성 검토	• 「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정관